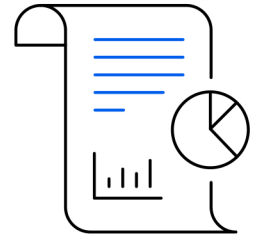


벤처확인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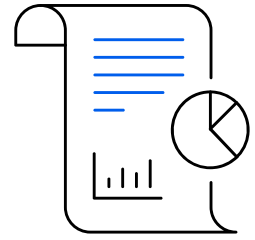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세 제	법인세 소득세 감면/공제/ 비과세/ 면제/이연	- 법인세·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% 감면 *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)	조세특례제한법 §6의②
		- 법인세 10% 공제 * 대상 : 기술혁신형중소기업(벤처기업, 이노비즈, 연구인력개발비 매출액 5% 이상 기업, 신기술/보건의기술/신제품/혁신형제약기업 등 인증기업)을 합병하는 경우	조세특례제한법 §12의3①
		- 법인세 5% 공제 * 대상 :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자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	조세특례제한법 §13의2
		- 소득세 비과세 * 대상 :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	소득세법 시행령 §12
		-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·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비율 확대 * 3천만원 이하 100%,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	조세특례제한법 §16①
		-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* 행사이익 : 행사 당시 시가 - 실제 매수가액 * 대상 : 벤처기업의 임직원	조세특례제한법 §16의2①
	지방세 감면 (취득세/ 재산세)	-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* 주식교환 및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후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아 양도차액 발생 시 제휴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* 대상 : 비상장 벤처기업(연구·인력개발비 5% 이상 투자기업 포함)의 주식 10% 이상을 보유한 주주	조세특례제한법 §46의7①
		-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채무자에 대한 과세특례 *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의 50% 이상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* 대상 :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	조세특례제한법 §46의8①
		- 취득세 75% 감면	지방세특례제한법 §58의3②
		-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 * 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 *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	
세금 감면	- 이공계 인력의 활용 지원 * 미취업 석·박사 학위자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 시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	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§16①	
근로 소득 금액 공제	-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*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, 출자금액과 1,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* 대상 : 벤처기업 임직원	조세특례제한법 §88의4①	

벤처확인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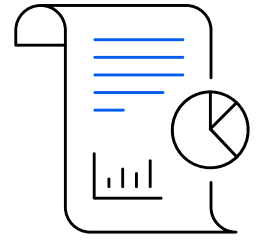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기 금 예	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	-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* 일반 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	기술보증규정
	코스닥시장 심사기준 우대	- 코스닥시장 심사기준 우대 * 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 *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 *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→ 10억원 이상 *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 *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	코스닥시장 상장규정 §6①
	벤처투자 허용	-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허용 * 기금의 10% 이내 투자 허용	과학기술기본법 §22③
		- 국민연금을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허용	국민연금법 §102②7
		-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허용	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§8①
		-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허용 * 적립금의 10% 이내 투자 허용	사립학교법 §32의2③
		- 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자, 벤처기업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§249의23
	우선보증	-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에 우선으로 신용보증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5
융자대상 요건 하향	- 방산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중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%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	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(방위사업청고시 제2020-5호) §6③	

벤처확인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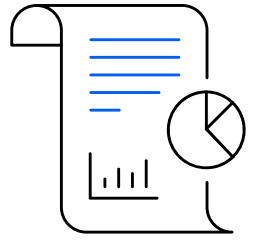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창업	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	- 벤처기업에 대해 현물출자 대상 확대 * 동산, 부동산, 채권 →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6①
		- 현물출자 대상 감정평가사 확대 * 「상법」에 따른 공인감정인(감정평가사, 공인회계사) → 기술평가기관도 포함 * 기술평가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기술보증기금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환경공단, 국가기술표준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정보통신사업진흥원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6②
	벤처인수 합병해택	-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§3의2②
		- 합병 절차의 간소화 *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허용하는 등 요건 하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5의3②
		-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*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% 이하이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5의9①
		-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* 벤처기업이 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% 이상 보유하면,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5의10①
		- 영업의 양도 계약 간소화 * 벤처기업이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%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5의11
		- 합병 절차의 간소화(요건 하향)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5의3
	교수·연구원 창업 우대	- 교수·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(5+1년)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6①
		- 교수·연구원(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)이 그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·겸직 가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6②

벤처확인기업
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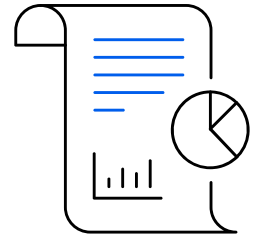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입지	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	- 대학·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* 대학교원, 학생, 연구원,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,000㎡ 이내의 실험실공장을 설치 가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8의2①
	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	- 창업보육센터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*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·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8의3①
		-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*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·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7의4②
	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	-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 * 기한 : 2022년 12월 31일까지 * 대상 :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	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④
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혜택	- 취득세(2배), 등록면허세(3배),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 * 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 * 대상 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	지방세특례제한법 §58②
	입주 우선순위 부여	-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순위 우대	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·운영에 관한 지침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564호) §12④
-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에서 첨단·지식·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 가능		시화국가산업단지 (시흥스마트허브) 관리기본계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177호)	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특허	우선심사	- 특허 및 실용신안, 디자인 등록, 출원 시 우선심사	특허법 시행령 §5 실용신안법 시행령 §5
	전용실시권 부여	-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 *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(단, 후·검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거쳐 우선적 전용실시권 부여) * 대상 :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(또는 연구원)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6의7①

벤처확인기업

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

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인력	스톡옵션 부여	-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* 임직원 → 기술·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§16의3①
		-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* 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15% → 벤처기업 50%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§11의3⑦
	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	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*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: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	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§16의2①3
		-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* 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	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§26의①
	입영연기	- 입영일자 연기 범위(2년)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기 가능 * 대상 : 벤처기업창업가, 벤처기업예비창업가,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사람 등	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(병무청훈령 제1763호) §23①
	산업 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요건 완화	-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상시근로자수 : 일반 10인 이상 →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5인 이상	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(병무청훈령 제1749호) §10①
	벤처 인재 우대	-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써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	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(인사혁신처예규 제96호) §2의5
		- 벤처기업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	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(여성가족부예규 제52호) §2의5
		-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보육 센터의 "전문인력" 자격 부여	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-67호) §5①
	벤처기업 근무 인턴 우대	- 재학생이 중소기업·벤처기업에서 인턴근무 시 학점부여(자격) 허용 (2년 이내)	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§12
전문가 지원	-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 부여 * 과학기술유공자들에 의한 창업 및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	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§12	

분류	세분류	내용	법적근거
광고	할인·지원	- TV·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 : 정상기준 35억원 (105억/3년) 한도 - TV·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(택 1) : TV 최대 50%·라디오 최대 70% 지원 * 대상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* www.kobaco.co.kr/smad/	KOBACO 자체규정